

보도자료

2010년 4월 14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광수 팀장(☎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박철 사무관(☎750-2192) cheol73@kcc.go.kr

지식경제부 강혁기 산업기술시장과장, 권기성 사무관(☎ 02-2110-5397)
기획재정부 김용호 신성장정책과장, 이해림 사무관(☎ 02-2150-4556)
교육과학기술부 박경수 거대과학기술반과장, 이강우 사무관(☎ 02-2100-6592)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이승재 주무관(☎ 02-3704-9220)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과학기술정책과장, 서정아 사무관(☎ 02-500-2453)
환경부 금한승 녹색기술산업과장, 원지영 사무관(☎ 02-2110-6680)
국토해양부 정경훈 녹색미래전략담당관, 이두희 사무관(☎ 02-2110-8154)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 녹색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통한 Best Performance 도모 -

-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주요 골자》

◆ 녹색인증 개요

- ① 녹색기술 인증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 ② 녹색사업 인증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 녹색인증 혜택

- ①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10.2.18)

-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 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강화

- (자금)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
- (R&D등) 국가R&D 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 (수출·마케팅) 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 지원 등

※ 금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

◆ 인증수행 기관

①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평가기관(지정 예정, 총 9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 인증서 신청/발급

① 접수·평가기간 : 수시 접수 및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② 인증절차 : 평가기관(평가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③ 발급명의 : 녹색기술·녹색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④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⑤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

◆ 녹색인증 표시(마크)



① 녹색인증 마크의 의미 : 새싹, 자연으로 가는 길, 희망을
모티브(motif)로,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

② 형태 : 사용상 효능을 증대시키는 심볼(symbol) 마크

◆ 관련 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관계부처 합동고시)

- 금일부터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는 '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공청회('09.10월) 및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됨
- 특히,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 회의만 총 18차례 개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음
-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適格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함
- * 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규격 제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녹색분야 R&D 성과와 '녹색성장' 중장기 비전 간 가교역할 수행 기대

〈 정량적 기술규격 : 예시 〉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기술수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제조용 소재 및 원료	실란계 가스	■ SiCl ₄ , SiHCl ₃ , SiH ₄ 순도 6N 이상
		폴리 실리콘	■ FBR, Siemens 7N 이상
		실리콘 잉곳	■ 단결정 직경 160mm 이상, MLT 10 μ s 이상 ■ 다결정 잉곳 700Kg이상, MLT 3 μ s이상
		실리콘 웨이퍼링	■ 면적 156mm×156mm, 두께 200 μ m 이하, TTV 30 μ m 이하
		실리콘 쉬트	■ EFG/Ribbon 두께 180 μ m 이하, MLT 1 μ s이상
		금속전극	■ 프린팅 금속 Ag, Al, Ag:Al, 도금 금속 Ni, Cu 여부
		EVA(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제조기술	■ Vinyl Acetate(VA) content: 23% 이상 ■ 투과도: 85% 이상

- 이와 관련, 금일 관계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에 걸친 인증대상,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그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인증(certification)’이라는 수요자지향적 정책수단과 결합시켰음

* 그린에너지('09.2월), 녹색기술중점육성('09.5월), 신성장동력기술로드맵('09.5월) 등

- 이는 녹색성장을 촉진케 하는 녹색新기술의 지속 개발·확산 및 효율적 사업화*를 통해 新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 30% 기준으로 ‘녹색전문기업’을 별도 확인

- 녹색기술 분야와 함께, 同 녹색기술의 활용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선정·고시된 녹색사업 분야는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同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날 汎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으며”,

-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 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금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시 한도적용 제외, 기술평가보증 우대(보증료 0.2% 감면 등), 민·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대상 포함
 (후속상용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수출·마케팅) 해외수출인큐베이터사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연계 (신청시 가점), 수출보험·보증료 10~20% 할인/보증한도 2배 우대
 (기타)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지원대상 신청시 가점) 등

-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5월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림

□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금일부터 신청(온라인 원칙)하면 됨

○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며,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 ~ 3990)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됨

* 단, 인증신청이 단시간에 과도하게 몰리는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활한 인증평가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처리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첨부 : 녹색인증제 운영방안

녹색인증제 운영방안

2010. 4.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
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I. 추진 경위

1 추진 배경

- '09년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
 - 녹색분야 대상 투자를 유인코자 녹색 인증제도 도입 방향 제시
 - * 제4차 녹색위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 ('09.7.6일)

2 추진 경과

- 「녹색인증 도입방안」 발표 ('09.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녹색기술·사업과 관련 지원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
 - 정부인증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세제지원 ('10.2.18)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 녹색인증 도입을 위한 민·관 합동 총괄작업반 운영 ('09년 ~)
 - 녹색기술(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및 녹색사업(9대 분야, 95개 사업) 인증 대상을 선정
 - * 분야별 전문가그룹(340여명) 참여, 인증대상 검토·도출 및 기술수준 검증
- 녹색인증제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고시(안) 마련
 - 녹색인증 대상·기준·절차·방법(인증체계 포함) 등을 확정 고시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14)에 맞춰 고시(관보게재)

2. 녹색인증 체계

1

녹색인증 대상

☐ 녹색기술

-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의 유망 녹색기술을 선정

☐ 녹색사업(프로젝트)

-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2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

☐ 녹색인증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신청접수/발급 창구를 운영, 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역할

☐ 녹색인증 평가기관

- 기술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 인증평가업무 수행

3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관련 업무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

☐ 주요 업무

-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

□ (접수·평가기간)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단, 추가자료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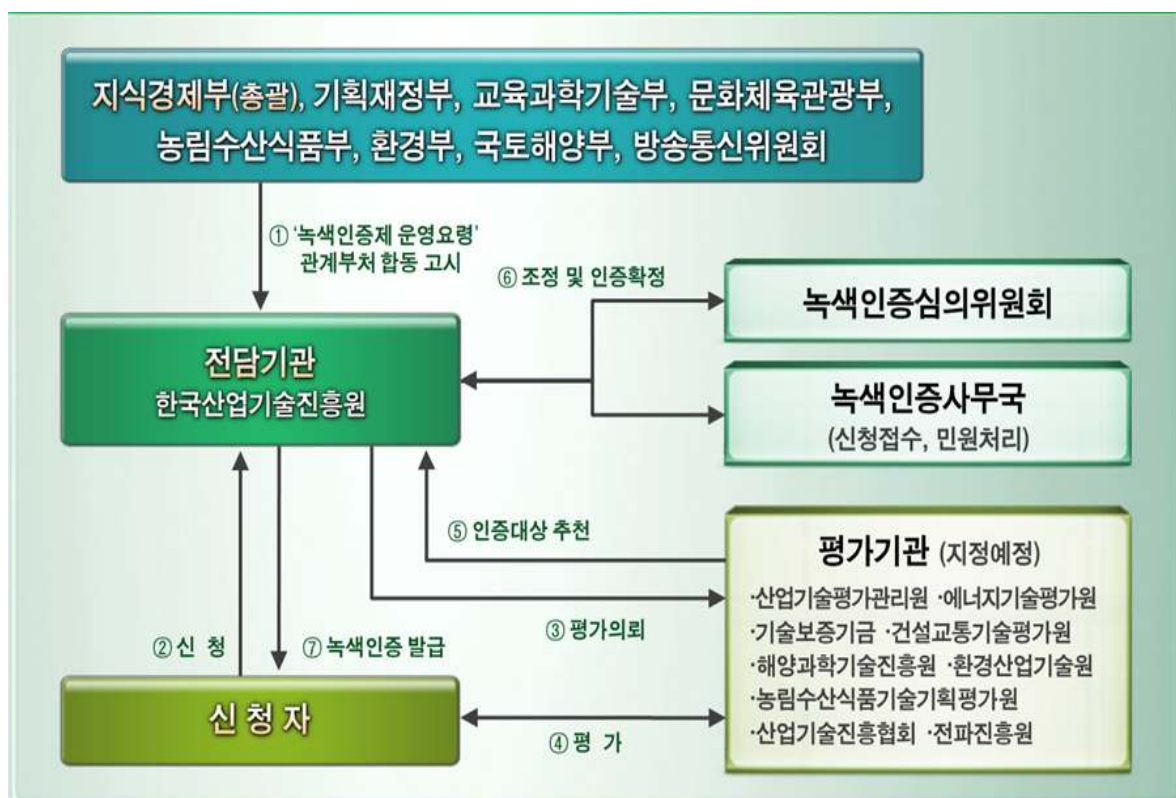
* 제도시행 초기 등 신청접수가 폭주하여 원활한 인증평가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처리유예 장치를 둠

□ (발급명의) 기술·사업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 (유효기간) 인증·확인일로부터 2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 (수수료)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기업 확인은 무료)

참 고 녹색인증 운영 체계



- 전담기관은 『인증사무국』 및 『인증심위원회』 운영
 - (인증사무국) 인증신청 접수, 애로사항 및 민원 처리
 - (심의위원회) 복수 인증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

3. 녹색기술 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

1

녹색기술 인증

□ (인증대상)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전략품목 및 핵심 요소기술 선정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규격 제시(최고기술 대비 70% 수준)

□ (인증기준) 평가기관은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 기술적 파급효과 (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기술수준 향상 등)	- 신청기술의 경쟁 제품 대비 비교 우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 시장규모, 성장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수익률), 수입대체 효과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2

녹색전문기업 확인

□ (확인기준)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다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포함

<참고> 기업 확인기준 설정 근거

○ 유사법령* 규정(첨단기술기업)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4. 녹색사업 인증

□ (인증대상) 9대 분야* 95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

*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 제외, 9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

□ (인증기준) 사업의 경제성은 금융권에서 별도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고 인증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사업 타당성
-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 여부 - 사업기여도 (총투자액 대비 비중)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등	-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 'A≥B' 여부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엔지니어링/기술적 오류 검토 - 정책목표 부합성 (사업 유형별 세부기준을 통해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판정)

*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70점 만점에 50점 이상)

5.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 우대방안

1

지원 개요

□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소관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한 지원 우대방안 마련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및 新사업개발 추진을, 녹색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창출, 리스크감소 등 경영지원 필요

□ (지원분야) 자금지원(융자보증투자), 판로개척(수출·마케팅), 사업화 연계(R&D·특허), 기타(인력, IPO지원) 등

□ (지원수준) 지원대상*별로 他정부인증(신기술(NET)인증, 벤처·이노비즈 기업인증 등)과 동등수준 지원

*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녹색전문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

◆ '10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 확정 계획

□ 자금지원 우대 (융자보증·투자)

- 자금확보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직접투자 등을 우대지원

세부 지원방안	시행 주체	세부 내용	시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중기청(중진공)	자금지원시 융자한도 등 배제	6월
기술평가보증 우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0.2%감면, 평가시 우대	5월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대상	지경부	'09년 5개펀드, 7,075억 조성	연중

□ 사업화 연계지원 (R&D·특허)

- 상용화 및 사업화연계 지원은 기술사장화 방지, 후속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국가R&D사업 참여 및 특허출원 심사 우대

세부 지원방안	시행 주체	세부 내용	시기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관계부처	국가R&D사업 참여기회 확대	연중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특허청	특허권리 조기 부여	4월

□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마케팅)

- 수출 등 연계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선점 및 해외진출 촉진

세부 지원방안	시행 주체	세부 내용	시기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지경부(KOTRA)	참가업체 선정심사시 가점	5월
수출계약 등 손실 보상	지경부(수보)	보험/보증료우대, 이용한도확대	9월
해외전시회 지원	지경부(KOTRA)	전시회 참가신청시 가점 부여	10월
수출기업화 지원	중기청	지원대상 선정심사시 가점	12월

□ 기타 (인력지원)

세부 지원방안	시행 주체	세부 내용	시기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	중기청(중진공)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12월

6. 향후 녹색인증제 운영일정

	세부 내용	일정	주 관
제도 정비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보게재	4.14	관계부처합동 (지경부 주관)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위원회 회의 개최	4.19週	관계부처
	▪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 평가기관 지정 - 평가기관 지정 통합공고	4.14 4.15	관계부처 지식경제부
	▪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세부지침)’ 고시	4.15	지식경제부
기반 구축	▪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 우대방안 - 소관 정책별 우대 지원방안 제시(1차) - 최종 지원방안 확정	4.14 5월말	관계부처 관계부처합동

별첨1 녹색기술 · 녹색사업 인증대상

1. 녹색기술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256개 세분류)
1. 신재생 에너지	1-1. 태양광 ①태양전지 제조용 소재 및 원료 ②초고효율 태양전지 및 모듈 ③지상전력 태양전지 및 모듈 ④박막형 태양전지 ⑤태양전지 생산자동화 설비 및 장비 ⑥태양전지용 BOS 주변기기
	1-2. 연료전지 (건물용PEMFC) ①소재 ②부품 ③시스템보조기기 ④시스템양산제조기술 ⑤연료전지생산용장비 (분산발전용MCFC) ⑥소재 ⑦부품기술 ⑧시스템보조기기 ⑨시스템및시스템양산제조기술 (건물용SOFC) ⑩구성요소 및 스택 ⑪관련 BOP ⑫시스템
	1-3. 에너지 저장 ①니켈-금속수소 전지 ②리튬이온 전지 ③리튬이온폴리머 전지 ④나트륨-황(NaS) 전지 ⑤레독스플로우 전지 ⑥초고용량 커패시터 ⑦리튬이온 커패시터
	1-4. 풍력 ①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②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③풍력 자원평가
	1-5.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①가스화공정 ②합성가스 정제 및 개질 ③가스화플랜트
	1-6. 청정연료 ①석탄가스화 ②석탄가스 정제 ③석탄가스 액화 ④천연가스 리포밍 ⑤F-T 합성유 제조 ⑥GTL 통합공정 ⑦바이오에탄올 ⑧바이오부탄올 ⑨바이오디젤 ⑩바이오가스 ⑪BTL
	1-7. 해양에너지 ①조력발전 ②조류발전 ③파력발전 ④해수온도차 이용
2. 탄소저감	2-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①연소후 CO ₂ 포집플랜트 ②연소전 CO ₂ 포집플랜트 ③연소중 CO ₂ 포집플랜트 ④CO ₂ 압축플랜트 ⑤CO ₂ 저장플랜트 ⑥CO ₂ 수송플랜트 ⑦CO ₂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2-2. Non-CO₂ 온실가스 처리 ①조력발전 ②조류발전 ③파력발전 ④해수온도차 이용
	2-3. 원자력 ①원자력노심재료및핵연료 ②원전계통및안전 ③원전제어계측기술 ④원전성능향상 ⑤원전환경 ⑥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 ⑦SMART ⑧수출맞춤형연구로 ⑨원자력이용메탄올생산시스템
3. 첨단 수자원	3-1. 히트펌프 ①전기구동 히트펌프 ②열원구동 히트펌프 ③가스구동 히트펌프
	3-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①하천환경 조사/평가 ②홍수터 보전·복원 ③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④생물서식환경 조성
	3-3. 담수플랜트 ①차세대 해수담수화 하이브리드 플랜트 ②신재생 담수플랜트
	3-4.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①홍수방어 시설 ②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③물부족 대응 시스템 ④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⑤가뭄·홍수예측 및 피해저감
	3-5. 통합수자원관리 ①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②유역 물 해석 ③수자원 평가 및 관리
	3-6. 수계 수질평가/관리 ①인공위성 활용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②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③상·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④오염 하천 정화 장치 ⑤미량유해물질 위해성 센싱시스템
	3-7. (해)수처리 ①해양용존 리튬
	3-8. 고효율 농업용수 ①농업용수고도이용 ②농업수리시설개선 ③농업용수관리시스템 ④청정농업용수공급
	3-9. 고도 수처리 ①하·폐수 고도처리 플랜트 ②하·폐수 재이용 플랜트 ③이산화탄소 저 발생수 처리 플랜트 ④빗물 재이용 장치 ⑤지능형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256개 세분류)
4. 그린IT	4-1. LED ①RGB LED 칩 ②열LED 패키지 ③차세대 LED 제조장비 ④수송용 LED 광원 모듈 ⑤의료/바이오 LED 광원모듈 ⑥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⑦백색 LED 조명기기 ⑧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⑨지능형 LED 실외 조명기기
	4-2. 시스템 반도체 ①정보통신/가전반도체 ②친환경절전형전력반도체 ③임베디드메모리반도체 ④바이오반도체
	4-3. 차세대 디스플레이 ①대화면AMOLED디스플레이 ②OLED조명 ③친환경초절전LCD ④친환경초절전PDP ⑤전자종이(플렉서블디스플레이 등)
	4-4. 그린 SW & 솔루션 ①IT기기에너지절감솔루션 ②가상화 ③에너지소비모니터링및최적화기술 ④전동기제어솔루션
	4-5. 그린 컴퓨팅 ①리눅스운영체제 ②분산컴퓨팅SW ③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SW ④그린SW플랫폼
	4-6. 그린 임베디드 SW ①정보기기용임베디드SW플랫폼 ②모바일용임베디드SW플랫폼 ③초소형운영체제플랫폼 ④임베디드SW개발도구 ⑤CPS컴퓨팅플랫폼
	4-7.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①개별물품 인식 RFID ②광역 USN 통신시스템 ③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④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⑤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4-8. Digital 선박 ①선박내정보인프라시스템 ②선박용이동/위성통신시스템 ③e-navigation기반운항정보시스템
	4-9. 스마트그리드 ①디지털변전시스템 ②송전시스템 ③100MVA급 유연전력시스템 ④AMI시스템 ⑤스마트배전시스템 ⑥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
	4-10. 그린 방송통신 ①그린방송통신네트워크 ②그린디지털방송 ③그린방송통신서비스 ④그린인터넷데이터센터
5. 그린차량	5-1. 그린카 ①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②클린디젤 자동차
	5-2. 저공해 고효율 차량 ①온실가스 저감형 자동차 ②신재생/저탄소연료 자동차
	5-3. 그린농기계 ①농작업기 ②농용 트랙터
	5-4. WISE Ship * WISE: World-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friendly ①미래형 친환경 선박 ②해양플랜트 ③친환경 레저 보트
	5-5. 첨단 철도 ①차세대 고속철도 ②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③도시형 자기부상열차
	5-6. 그린자전거 ①고부가가치형 경량자전거
6. 첨단그린 주택·도시	6-1. U-City ①U-City 통합운영센터 ②U-City 운영관리 ③U-City 스마트그리드 ④Eco-Road 조성 ⑤도시 물순환 통합관리 ⑥U-Eco 공간구성 컴포넌트 ⑦U-Eco 공간구축
	6-2. ITS(지능형교통시스템) ①U-교통 서비스 기반 ②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③Smart Highway
	6-3. GIS(공간정보) ①실시간능동형국토공간시스템 ②지능형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 ③차세대공간정보융합시스템
	6-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①고효율외피시스템 ②저탄소친환경건축자재 ③고효율설비시스템 ④농촌환경 농가주택
7. 신소재	7-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①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②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③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④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⑤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7-2. Ionic Liquid 소재 ①전해질 소재 ②분리정제 소재 ③그린촉매공정 소재 ④마찰저감 소재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256개 세분류)
	7-3. 나노탄소융합소재 ①탄소나노튜브 ②흑연/탄소 나노섬유 ③탄소섬유 ④복합소재
	7-4. 기능성 나노필름 ①광학용 나노필름 ②열응용 나노필름 ③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7-5. 농산자원유래 천연소재 ①건강기능성식품소재 ②기능성화장품소재 ③기능성바이오신소재 ④천연식품첨가물
	7-6. 친환경 농자재 ①고부가가치형 경량자전거 ②흑연/탄소 나노섬유
	8-1. 국제환경규제대응 ①유해물질 대체
	8-2. 무오염생산 ①유니소재 ②그린프린팅제품 ③그린프로세스(E2)제품 ④무배출그린생산 ⑤청정융합
8. 청정생산	8-3. 자원순환 ①자원순환 ②재제조 ③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
	9-1. 생태환경변화대응 ①식량자원 LCI 구축 ②농업환경 ③어업환경 ④산림환경
9. 친환경 농식품	9-2. 생물자원 ①유전자원 ②신품종
	9-3. 저투입생산 ①대체에너지 이용 ②LED 이용 ③친환경생산
	9-4. 첨단자동화시스템 ①작업용로봇 ②동식물공장시스템 ③어업(양식)자동화
	9-5. 식품생산 ①유기식품 ②비가열처리식품 ③최적화 식품공정
	9-6. 안전유통 ①검역시스템 ②품질관리시스템 ③냉각시스템 ④저장·포장재 ⑤에코주방시스템
	10-1. 기후변화에측 및 모델링 ①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②지구시스템 모델링 ③탄소수지 정량화
10. 환경보호 및 보전	1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①기후변화영향감시 ②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 ③기후변화 적응
	10-3. 폐기물 및 폐자원 ①폐기물/자원 회수 ②폐기물/자원 재활용 ③폐기물 저감
	10-4. 유기성 부산물 자원화 ①폐목재 에너지화 ②하수슬러지 에너지화 ③가축분뇨 ④농수산 부산물
	10-5. 친환경제품 ①친환경 원부자재 ②환경친화성 첨가제 ③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소재
	1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①생태계모니터링및정보관리 ②인간활동에대한생태영향평가 ③훼손된자연생태계복원관리 ④토양지하수오염/복원
	1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①에코 실내 환기설비 ②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③기능성 건축자재 ④공기중유해성 물질모니터링센서 ⑤공기중 유해성물질 측정기 ⑥실내공기질(IAQ)진단/개선컨설팅프로그램 ⑦산업용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처리설비 ⑧배기가스 수은 제거설비

2. 녹색사업

9대 분야	95개 사업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1-1. 태양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1-2. 풍력(해상·육상)에너지 보급
	1-3. 연료전지 개발보급
	1-4.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플랜트 건설·운영
	1-5. 청정연료개발·보급·활용
	1-6. 목질계/에너지작물 개발·보급
	1-7.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연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이용
	1-8. 신재생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1-9.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1-10. 소각여열 회수 재이용
	1-1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1-12. 매립가스 자원화
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1-1. CO ₂ 포집·저장·활용플랜트 설치·운영
	1-2. 온실가스저감 실증플랜트 조성
	1-3. non-CO ₂ 배출저감
	1-4. 도시기반 복합형 에너지플랜트 설치·운영
	1-5. 탄소저감을 위한 원자력 이용
3. 첨단수자원개발·처리·관리 사업	1-1. 해수 담수화
	1-2. 공공 지하수 개발 및 함양
	1-3. 우수 유출 저감 및 저류시설
	1-4. 우수 수집·정화·이용시설 설치
	1-5. 대하천 홍수 조절지 건설
	1-6. 환경친화형 중소규모 댐 건설
	1-7.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운영
	1-8. 상수도 개발 및 관리
	1-9. 첨단 광역 상수도 망 공급
	1-10. 고효율 하폐수처리 및 재이용플랜트 건설·운영
4.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1-1. 스마트그리드 도입·확산
	1-2. LED 응용·보급·확산
	1-3. RFID/USN 응용·보급·확산
	1-4. 친환경·초절전디스플레이(OLED포함)보급·확산
	1-5. 고효율 그린 IDC(Internet Date Center) 전환·구축
	1-6. EMS(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1-7. 원격협업시스템·스마트워크센터 구축
	1-8. 그린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1-9. 그린 방송통신 서비스 응용·보급·확산
5. 그린카·녹색교통 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1-1. 친환경 그린카 보급
	1-2. 그린카 지원인프라(충전, BD주유소 등) 구축
	1-3. 친환경 자전거 이용기반(도로망, 공용운용시스템 등) 구축(*)
	1-4. 차세대 첨단도로 구축
	1-5.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인버터형 전기기관차 포함) 구축
	1-6. 도시형 경량철도 시스템(무가선 저상트램, 자기부상열차, 고무차륜 등 포함) 구축
	1-7. 대도시권 교통체계(환승시설, 급행버스체계, 교통망 포함) 구축
	1-8. U-GIS 도시 인프라 구축
	1-9.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10. 운행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9대 분야	95개 사업
6.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1-1. 친환경건설자재 보급
	1-2.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초고층 빌딩 포함) 신·개축
	1-3. 청정에너지 이용 주택 건축,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1-4.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1-5. 실내 주거환경 개선
	1-6. 도시재생(친환경 건축물 해체, 건축물 및 단지 녹화, 신한옥 단지 조성 포함)
	1-7. U-City 통합 운영센터 구축
	1-8. U-Eco 공간 및 시설 구축
	1-9. 에너지 자립형 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1-10. 녹색도시 조성
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1-1. 기업간 용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1-2. 기업간 에너지 교환망(폐열 재이용) 구축
	1-3. 산업단지-지역사회 에너지 교환망 구축
	1-4.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
	1-5.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구축
	1-6. 지역에코혁신 구축
	1-7. 그린오션기술이전 및 보급체계 구축
	1-8. 폐금속자원 재자원화체계 구축
	1-9. 재제조시스템 구축
8. 친환경 안전농식품 지원·공급 사업	1-1. 유기농축산물 생산·가공
	1-2. 밀폐형 청정 동식물 생산시스템
	1-3. 지속가능한 식품클러스터 기반 구축
	1-4. 에너지절감 농업생산시설 보급
	1-5. 마을/온실용 지역난방네트워크
	1-6. 농지/농업용수 정화 및 관리
	1-7.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가공 및 재활용
	1-8. 에너지 절감형 어선시스템 보급
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1-1. 숲 조성 및 관리(*)
	1-2. 환경적 보호가치 높은 지역의 조경(*)
	1-3. 자연체험 학습시설 조성 및 관리(*)
	1-4. 농산어촌 녹색테마공원 조성
	1-5.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1-6. 생태축 조성(*)
	1-7. 습지보전·관리(*)
	1-8. 도서, 해안 사구 보전 관리(*)
	1-9. 하천변시설(둔치, 저류지, 지하수 관리 등) 정비
	1-10. 홍수예방 하천시설 및 상습침수지구 정비
	1-11.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설치·운영
	1-12. 폐전기전자제품 및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1-13. 지역기후변화 영향 감시·평가적응(종합, 부문)
	1-14. 토양·지하수 보전 및 오염복원
	1-15.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플랜트 설치·운영
	1-16.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플랜트 설치·운영
	1-17. 해양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18. 녹색거점(새만금 등) 연안공간 조성사업
	1-19. 해양생태계·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1-20. 친환경적 폐석면 처리
	1-21. 생태관광 및 친환경 관광
	1-22. 생태우수마을/생태복원우수마을 조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

별첨2 녹색인증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 www.greencertif.or.kr

□ (1단계) 기관회원 등록

- ① 홈페이지 접속 (초기화면> 회원가입> 기관회원등록)
- ② 기관 개요(기관명, 대표자, 업종, 주생산물, 직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 기입
- ③ 본인 또는 녹색인증을 전담할 실무대리인 등록(위임장사본 첨부)
- ④ 사용자코드와 임시비밀번호 부여(기관회원 등록시 기입한 E-mail로 송부)

□ (2단계) 녹색인증 신청

- ① 부여받은 사용자코드를 통해서 녹색인증 신청시 필요한 기관등록 인증서* 발급 (초기화면 > 기관등록인증서발급화면)
* 녹색인증 신청시 필요
- ② 홈페이지(초기화면 > 기관회원로그인 > 신청화면)를 통해 녹색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녹색인증 온라인 신청 절차 >

